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9년 7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00호, 2008. 7. 3. 공포·시행)에 따라 국 단위 기구를 축소하고, 현장 중심의 사업소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구 위임사무의 직제 순을 변경하는 한편,
-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정복지과 소관 구 위임 보육시설 사무 중 업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시설은 제외로 함.(안 별표)
- 나. 청소과, 하수과, 수도시설과 → 맑은물청소사업소 수도시설과 · 하수과 · 청소과로 변경함.(안 별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질의답변 내용과 같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6호
의결년월일	2009. 7. 10. (제153회)

제출년월일 : 2009. 6. 2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00호, 2008. 7. 3. 공포·시행)에 따라 국 단위 기구를 축소하고, 현장 중심의 사업소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구 위임사무의 직제 순을 변경하는 한편,
-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정복지과 소관 구 위임 보육시설 사무 중 업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시설은 제외로 함.(안 별표)
- 나. 청소과, 하수과, 수도시설과 → 맑은물청소사업소 수도시설과·하수과·청소과로 변경함.(안 별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가정복지과의 위임사무명란의 제1호 중 “다만, 공립·법인 및 단체보육시설은 제외”를 “다만, 정부지원 시설은 제외”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 중 “다만, ‘99년 이전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및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육시설은 제외”를 “다만, 정부지원 시설은 제외”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실과소별란 중 환경보전과란을 도시계획과란 다음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실과소별란 중 청소과란, 하수과란, 수도시설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의 실과소별란 중 재난안전관리과란 다음에 맑은물청소사업소 수도시설과란·하수과란·청소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기관
맑은물청소사업소(수도시설과)	1.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	가. 약수터 유지관리 및 보수	· 「먹는물관리법」 제7조	구청장

실과 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 기관
(하수과)	1.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허가 및 신고 나. 굴착행위의 신고 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사후관리 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시정·조치·폐쇄 명령 마. 이행보증금의 예치 바. 지하수 원상복구 명령 사.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명령 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보고 자. 수질검사 차. 지하수 관련 출입검사 카. 지하수 관련 타인의 토지 출입 등 타. 지하수 관련 청문 파.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지하수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 ·같은 법 제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1조	구청장

실과 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 기관
	2. 소하천 점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나. 소하천 정비 상태의 점검 다. 소하천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라. 법령위반자 및 공익을 위한 허가 취소 등의 처분 마.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바.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한 법령위반자의 조치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7조·제18조 및 제18조의2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	구청장
	3.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하수도의 설치 나. 타 공사의 시행 다.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라. 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허가 마. 재해시설의 설치 명령 및 공사승인 바. 점용허가 및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준공검사 사.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아.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자. 타 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차.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접수 카. 일시사용 신고의 접수 타. 하수관거의 준설 파.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 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	· 「하수도법」 제11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같은 조례 제15조 · 같은 조례 제15조 · 같은 조례 제1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 같은 조례 제3조 · 같은 조례 제4조 · 같은 조례 제5조 · 같은 조례 제10조·제11조 및 제14조 · 같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기관
	4.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 「하수도법」 제34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55조	구청장
	5. 개인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나.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다. 배수설비공사의 시행 라. 배수설비공사의 준공검사	· 「하수도법」 제32조 · 같은 법 제2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 · 같은 조례 제8조	
	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유수면의 관리 나.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허가 다. 접속토지의 수면 이하로의 굴착허가 라. 준설 및 굴착 허가 마. 인수 및 주수 허가 바. 토석, 모래 또는 자갈채취, 식물채배 및 채벌 허가 사. 토석·진개 등의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 허가 아. 부두, 방파제 등의 시설물 점용 또는 사용허가 자. 기타 점용허가 차. 점용허가 받은 자의 변경허가 카. 같은 허가의 고시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같은 법 제5조	

실과 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임 기관
	7. 제6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나.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감면 다. 원상회복 의무명령 및 면제승인	·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 법 제12조	구청장
	8. 제6호의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다.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의 처리 라. 성명, 주소변경 등 제 신고의 처리 마. 허가기간 연장 허가	·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제7조	
	9. 제6호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의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가. 허가의 취소 나. 효력의 정지처분, 원상회복, 손해 방지 시설의 설치 다. 공작물 등의 개축허가 이전조치	·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7조	
	10.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 명령		·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11. 공유수면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제1항	
	12.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조사 및 질문		· 「공유수면관리법」 제14조제1항	

실과 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 기관
(청소과)	1. 「폐기물관리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제2항 에 한함) 나. 진공노면청소차 관리 및 운영 다. 환경기동반 운영 및 복무 관리 (노조사무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 과·징수 조례」 제4조 및 제11 조 · 같은 법 제4조제1항 · 같은 법 제4조제1항	구청장
	2. 음식물쓰레기 감 량 의무사업자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의 신고 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6조 및 제18조 ·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17조	
	3. 공중화장실 관리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

현					개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가 정 복지과	1. 아동보호에 관한 다음	가.~다.(생 략)	·(생 략)	구청장	----	1. -----	가.~다.(현행과	·(현행과 같음)	----
	의 권한(다만, 공립·법 인 및 단체 보육시설은 제외)				---(다만, 정부 지원 시설은 제외)	가.~다.(현행과 같음)			
	2. 보육시설 중에서 민 간·직장·부모협동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다만, '99 년 이전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및 근 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육시설은 제외)	가.~카.(생 략)	·(생 략)		2. -----	가.~카.(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8.(생 략)				---(다만, 정부 지원 시설은 제외)	3.~8.(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청소과	1.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제2항에 한함) 나. 진공노면청소차 관리 및 운영 다. 환경기동반 운영 및 복무 관리 (노조사무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 료부과·징수 조례」 제4조 및 제11조 · 같은 법 제4조제1항 · 같은 법 제4조제1항	구청장	<삭제>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2. <u>음식물쓰레기 감량</u>	가. <u>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u>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의무사업자에 관한 사항	<u>이행계획의 신고 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u>	· 「부천시 음식물류폐기 물 수집·운반 및 재활 용 촉진 조례」 제6조 및 제18조						
		나. <u>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u>	· 「부천시 음식물류폐기 물 수집·운반 및 재활 용 촉진 조례」 제17조						
3. <u>공중화장실 관리에 관 한 다음의 권한</u>	가. <u>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u>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하수과	1. 지하수 개발 · 이용에 관 한 다음의 권한	가.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u>허가 및 신고</u> 나. 굴착행위의 신고 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u>사후 관리</u>	· 「지하수법」 제7조·제8조 및 <u>제9조</u>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 <u>조·제13조 및 제14조</u>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 <u>6조·제7조·제8조 및 제9조</u> · 같은 법 제9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 · 같은 법 제9조의5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구청장	<삭 제>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에 대한 시정·조치·폐쇄 명령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마. 이행보증금의 예치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바. 지하수 원상복구 명령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						
		사.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명령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u>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u> <u>보고</u> <u>자. 수질검사</u> <u>차. 지하수 관련 출입검사</u> <u>카. 지하수 관련 타인의</u> <u>토지 출입 등</u> <u>타. 지하수 관련 청문</u> <u>파. 지하수 관련 과태료</u> <u>부과·징수</u>	· <u>같은 법 제17조</u> · <u>같은 법 시행령 제28조</u>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u> · <u>같은 법 제20조</u> · <u>같은 법 시행령 제29조</u> · <u>같은 법 제21조</u> · <u>같은 법 제31조</u> · <u>같은 법 시행령 제41조</u>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u> · <u>같은 법 제35조</u> · <u>같은 법 제41조</u>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2. 소하천 점용 및 유지관리 에 관한 다 음의 권한	가.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 가 및 신고 나. 소하천 정비 상태의 점검 다. 소하천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라. 법령위반자 및 공익을 위한 허가 취소 등의 처분 마.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바.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 한 법령위반자의 조치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7조·제18조 및 제18조의2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3.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하수도의 설치	「하수도법」 제11조						
		나. 타 공사의 시행	· 같은 법 제14조						
		다.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 같은 법 제19조						
		라. 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마. 재해시설의 설치 명령 및 공사승인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바. 점용허가 및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준공검사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사.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같은 조례 제15조						
		아.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 같은 조례 제15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u>자. 타 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u> <u>금의 부과·징수</u> · 「 <u>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u>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u>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u> <u>등</u>)	· <u>같은 조례 제15조</u>						
		<u>차.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접수</u>	· <u>같은 조례 제3조</u>						
		<u>카. 일시사용 신고의 접수</u>	· <u>같은 조례 제4조</u>						
		<u>타. 하수관거의 준설</u>	· <u>같은 조례 제5조</u>						
		<u>파.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u> <u>료의 부과·징수</u>	· <u>같은 조례 제10조·</u> <u>제11조 및 제14조</u>						
		<u>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u>	· <u>같은 조례 제12조 및</u> <u>제13조</u>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4. <u>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다음 의 권한</u>	<u>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u> <u>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 등</u> <u>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u> <u>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명령</u> <u>마. 과태료 부과·징수</u> <u>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 분을 받은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의 계속공사</u>	· 「하수도법」 제34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55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5. 개인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 「하수도법」 제32조							
		나.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 같은 법 제2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다. 배수설비공사의 시행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							
		라. 배수설비공사의 준공검사	· 같은 조례 제8조							
		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유수면의 관리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나.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허가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 접속토지의 수면 이하로의 굴착허가	· 같은 법 제5조								
	라. 준설 및 굴착 허가	· 같은 법 제5조								
	마. 인수 및 주수 허가	· 같은 법 제5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u>바. 토석, 모래 또는 자갈채취, 식물재배 및 채벌 허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5조 						
		<u>사. 토석·진개 등의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 허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5조 						
		<u>아. 부두, 방파제 등의 시설물 점 용 또는 사용허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5조 						
		<u>자. 기타 점용허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5조 						
		<u>차. 점용허가 받은 자의 변경허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u>카. 같은 허가의 고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5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7. 제6호에 따라 허가 를 받은 자에 관 한 다음의 권한	가.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나.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감면 다. 원상회복 의무명령 및 면제승인	· 「공유수면관리법」 제 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 법 제12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8. 제6호의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다.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 고의 처리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라. 성명, 주소변경 등 제 신 고의 처리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마. 허가기간 연장 허가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9. 제6호의 허가를 받 은 자가 법령을 위 반하였을 때의 다음 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가. 허가의 취소	·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						
		나. 효력의 정지처분, 원상 회복, 손해방지 시설의 설 치	· 같은 법 제17조						
		다. 공작물 등의 개축허가 이전조치	· 같은 법 제17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10. 공유수면의 장애물 <u>제거 명령</u>		· 「공유수면관리법」 <u>제12조</u> · <u>같은 법 시행령 제21조</u>						
	11. 공유수면의 사용 <u>제한 또는 금지</u>		·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u>제1항</u>						
	12. 공유수면관리를 위 <u>한 조사 및 질문</u>		· 「공유수면관리법」 제14조 <u>제1항</u>						
<u>수 도</u> <u>시설과</u>	1. 먹는물 공동시설의 <u>관리</u>	가. 약수터 유지관리 및 <u>보수</u>	· 「먹는물관리법」 제7조	구청장	<삭 제>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신설>					맑은물청소 사업소 (수도 시설과)	1. 먹는물 공동 시설의 관리	가. 약수터 유지관리 및 보수	· 「먹는물관리법」 제7조	구청장
<신설>					(하수과)	1. 지하수 개발 · 이용에 관 한 다음의 권한	가.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허가 및 신고 나. 굴착행위의 신고 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사후 관리	· 「지하수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 조·제13조 및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 조·제7조·제8조 및 제9조 · 같은 법 제9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 · 같은 법 제9조의5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구청장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 기관
							<u>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시정·조치·폐쇄 명령</u> <u>마. 이행보증금의 예치</u> <u>바. 지하수 원상복구 명령</u> <u>사.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명령</u>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 2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 26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 기관
							<u>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u> <u>보고</u> <u>자. 수질검사</u> <u>차. 지하수 관련 출입검사</u> <u>카. 지하수 관련 타인의</u> <u>토지 출입 등</u> <u>타. 지하수 관련 청문</u> <u>파. 지하수 관련 과태료</u> <u>부과·징수</u>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41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 기관
						2. 소하천 점용 및 유지관리 에 관한 다 음의 권한	가.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나. 소하천 정비 상태의 점검 다. 소하천 점용에 따른 원상 회복 비용의 예치 라. 법령위반자 및 공익을 위 한 허가 취소 등의 처분 마.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바.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한 법령위반자의 조치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 18조의2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 기관
						3.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하수도의 설치 나. 타 공사의 시행 다.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라. 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마. 재해시설의 설치 명령 및 공사승인 바. 점용허가 및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준공검사 사.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아.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하수도법」 제11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같은 조례 제15조 · 같은 조례 제15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임 기관
							<u>자. 타 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u>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 같은 조례 제15조	
							<u>차.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접수</u>	· 같은 조례 제3조	
							<u>카. 일시사용 신고의 접수</u>	· 같은 조례 제4조	
							<u>타. 하수관거의 준설</u>	· 같은 조례 제5조	
							<u>파.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u>	· 같은 조례 제10조 · 제11조 및 제14조	
							<u>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u>	· 같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4. <u>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다음 의 권한</u>	가. <u>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u> 나. <u>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 등</u> 다. <u>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u> 라. <u>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명령</u> 마. <u>과태료 부과·징수</u> 바. <u>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 분을 받은 처리시설 설계·시 공업자의 계속공사</u>	· 「하수도법」 제34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55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5. <u>개인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u>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u> 나. <u>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u> 다. <u>배수설비공사의 시행</u> 라. <u>배수설비공사의 준공검사</u>	· 「하수도법」 제32조 · 같은 법 제2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 · 같은 조례 제8조	
						6. 「 <u>공유수면관리법</u> 」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u>공유수면의 관리</u> 나. <u>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허가</u> 다. <u>접속토지의 수면 이하로의 굴착허가</u> 라. <u>준설 및 굴착 허가</u> 마. <u>인수 및 주수 허가</u>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제5조 · 같은 법 제5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u>바. 토석, 모래 또는 자갈채취, 식물재배 및 채벌 허가</u> <u>사. 토석·진개 등의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 허가</u> <u>아. 부두, 방파제 등의 시설물 점용 또는 사용허가</u> <u>자. 기타 점용허가</u> <u>차. 점용허가 받은 자의 변경허가</u> <u>카. 같은 허가의 고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 제5조</u> · <u>같은 법 제5조</u> · <u>같은 법 제5조</u> · <u>같은 법 제5조</u> · <u>같은 법 제5조</u> · <u>같은 법 시행령 제7조</u> · <u>같은 법 제5조</u>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 기관
						7. 제6호에 따라 <u>허가를 받은 자</u> 에 관한 다음의 <u>권한</u>	가. 점용료 및 사용료의 <u>부과·징수</u> 나. 점용료 및 사용료의 <u>부과감면</u> 다. 원상회복 의무명령 및 <u>면제승인</u>	· 「공유수면관리법」 <u>제9조</u> · <u>같은 법 시행령 제13조</u> · <u>같은 법 제9조</u> · <u>같은 법 시행령 제16조</u> · <u>같은 법 제12조</u>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8. 제6호의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다.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 고의 처리 라. 성명, 주소변경 등 제 신 고의 처리 마. 허가기간 연장 허가	·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9. 제6호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의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가. 허가의 취소 나. 효력의 정지처분, 원상회복, 손해방지 시설의 설치 다. 공작물 등의 개축허가 이전조치	·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7조	
						10.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 명령		·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11. 공유수면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제1항	
						12.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조사 및 질문		· 「공유수면관리법」 제14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 기관
<신설>					(청소과)	1. 「폐기물관리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제2항에 한함) 나. 진공노면청소차 관리 및 운영 다. 환경기동반 운영 및 복무 관리 (노조사무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 료부과·징수 조례」 제4조 및 제11조 · 같은 법 제4조제1항 · 같은 법 제4조제1항	구청장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 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 기관
						2. <u>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자에 관한 사항</u>	가. <u>음식물쓰레기 감량의 무이행계획의 신고 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u>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 「부천시 음식물류폐기 물 수집·운반 및 재활 용 촉진 조례」 제6조 및 제18조	
						나. <u>음식물쓰레기 감량의 무 사업장 지도단속</u>	· 「부천시 음식물류폐기 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17조		
						3. <u>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u>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u>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